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안 번호	18-104
----------	--------

제출연월일 : 2018. 11. .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협의회명** :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나. **참가현황** : 61개 지방자치단체(광역 6개, 기초 56개)

(서울) 서울시, 종로구, 성동구, 광진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강서구, 서대문구, 금천구, 송파구, 강동구, 중구, 구로구, 관악구, 양천구, 동대문구(19)
(부산) 부산시, 금정구, 사하구(3) (대구) 중구(1) (대전) 유성구, 대덕구(2)
(인천) 인천시, 동구, 서구(3) (광주) 광주시, 동구, 서구, 북구(4)
(경기) 수원시, 광명시, 오산시, 시흥시, 화성시, 부천시, 용인시(7)
(충북) 충주시, 음성군, 옥천군, 제천시(4) (전북) 전주시, 군산시, 완주군(3)
(충남) 논산시, 보령시, 아산시, 당진시, 부여군(5) (세종) 세종시(1)
(전남) 순천시, 광양시, 화순군, 장흥군(4) (경북) 구미시, 영주시, 포항시(3)
(경남) 김해시(1) (강원) 횡성군(1)

다. 기능(안 제2조)

- 1) 아동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보 및 우수사례 상호 교환에 관한 사항
- 2)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권리에 관한 조사·연구·교육에 관한 사항
- 3)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국제적 연대감 조성에 관한 사항

라. 구성 및 임원(안 제3조 ~ 제5조)

- 1) 구 성 : 지방자치단체
- 2) 임 원 : 회장 1인, 부회장 5인 이내, 감사 2인, 고문
- 3) 임 기 : 1년, 1회 연임

마. 회의 및 의결(안 제6조)

- 1)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있는 경우에 소집
- 2)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회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바. 경비부담(안 제12조)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유니세프와 참여 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부담

사. 가입 및 탈퇴(안 제16조)

- 1) 본 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단체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가입
- 2) 본 협의회에 가입한 단체는 본 협의회에 탈퇴서를 제출하여 탈퇴할 수 있으며, 협의회 의무사항을 2년간 지키지 않을 경우 자동 탈퇴 처리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1)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 2)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3) 「유엔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

나. 예산조치 : 2019년 본예산에 연회비 500만원 편성

다. 전 문 : 별첨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2015. 9. 14. 제정

제1조(목적) 모든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간의 협의기구인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아동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보 및 우수사례 상호교환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권리에 관한 조사, 연구, 교육에 관한 사항
3.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국제적 연대감 조성에 관한 사항
4. 기타 아동친화도시의 발전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협의회는“별표”의 지방정부로 구성하며, 회원은 그 지방정부의 장이 된다.

제4조(임원 및 조직)

- ① 협의회에 모임을 대표하는 회장 1인, 부회장 5인 이내, 감사 2인, 고문 등을 두며 임원진 외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자문단 등을 구성할 수 있다.
- ② 회장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하고, 부회장과 감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부회장은 1권역당 1인을 원칙으로 한다.
-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④ 협의회 제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무총장과 협의회장이 협의하여 임명한다.

제5조(임원의 임기)

- ①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 ②회원인 지방정부의 장의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부단체장이 대리참석할 수 있으며,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 이 경우 위임장을 회의 개시전까지 회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 및 의결)

- ①회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며, 협의회장이다.
- ②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 ③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1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④협의회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한 회원이 사전에 대표회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보며 의결사항에 따른다.
- ⑤협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의안의 제출)

- ①회장은 회의개최 30일 전까지 각 지방정부의 아동친화도시 관계기관 및 각 회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 ②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회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회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안건의 배부) 협의회는 부의할 안건을 회의개최 전에 각 회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당일 배부할 수 있다.

제9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 ① 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장은 회의결과를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회장은 협의회 회의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협의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실무협의회 등)

- ① 협의회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정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소속 자치단체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운영은 회장소속 자치단체에서 주관한다.
- ③ 실무협의회는 협의안건의 실무검토의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고 협의회 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한다.

제12조(경비부담)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유니세프와 참여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부담하며, 협의회는 이를 위해 지자체별 연회비를 책정할 수 있다.

제13조(회계보고 및 결산)

- ①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② 협의회 회계는 사무국이 관장하고, 매년 1회 정기회의에서 경비집행상황을 보고하고 협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규약개정) 이 규약의 개정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약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16조(가입 및 탈퇴)

- ①본 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단체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가입한다.
- ②본 협의회에 가입한 단체는 본 규약에 명시된 권리를 가지며, 협의회에서 요구하는 의무를 성실히 다하여야 한다.
- ③본 협의회에 가입한 단체는 본 협의회에 탈퇴서를 제출하여 탈퇴할 수 있으며, 협의회 의무사항을 2년간 지키지 않을 경우 자동탈퇴 처리한다.

【별표】**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지자체**

(2018. 11월 기준, 총 61개 지자체)

지역	자치단체명	비고
강원	횡성군	1개
경기	광명시, 오산시, 수원시, 시흥시, 화성시, 부천시, 용인시	7개
광주	광주광역시, 북구, 서구, 동구	4개
경남	김해시	1개
경북	구미시, 영주시, 포항시	3개
대구	중구	1개
대전	유성구, 대덕구	2개
부산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하구	3개
서울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송파구, 강서구, 강동구, 성동구, 금천구, 종로구, 서대문구, 광진구, 강북구, 중구, 구로구, 관악구, 양천구, 동대문구, 은평구	19개
인천	인천광역시, 서구, 동구	3개
전남	광양시, 순천시, 화순군, 장흥군	4개
전북	완주군, 군산시, 전주시	3개
충남	아산시, 당진시, 보령시, 논산시, 부여군	5개
충북	음성군, 충주시, 옥천군, 제천시	4개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1개